



의료정보보호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Medical Data Privacy Protection Act should be Reappraised



박 양 동 | Yang Dong Park, MD

서울소아병원 원장

건강정보관련 법안 대책위원회 위원장/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

Seoul Pediatrics Hospital

E-mail : drpyd@kma.org

J Korean Med Assoc 2007; 50(3): 204 - 206

Abstract

The government had a plan to set up a new medical information law last October, which allows hospitals to shar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ith given consent. The aim of this act is to manage and protect medical information effectively. However, civic groups and medical organizations strongly claim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leakage of individuals' private medical information that can raise conflicts of interest under the medical information act. Computeriza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the business efficiency, however, it may cause a serious damage to the society as well as to individuals should the information be used without the individuals' consent. In the 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improved medical service and its effectiveness via informatization is an unavoidable choice, however, it is also hoped that the issues of human rights be thorough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medical informatization to prevent a potential aftermath to the people and the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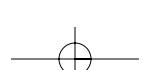
Keywords : Medical Data Privacy Protection Act; Human right

핵심 용어 : 의료정보보호법; 인권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이를 관리 · 감독이 가능토록 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 본인의 ‘동의’ 하에 건강기록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자는 것

이다. 개인 건강의 공공성이 그 바탕 의식으로 보인다. 당연히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효율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고정된 기준이 있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또 누가 규정하는가? 여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위의 목적과 효율의 방법을 정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주관과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 결국 정보의 중앙집중화는 개인들의 정보와 비용으로 유지되고 정보의 사용은 그 비용에서 보수를 받는 권리자들에게 위임된다. 이처럼 효율성을 내걸고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란 기구의 명칭도 우스꽝스럽다. 굳이 보호를 거론한 것은 사용을 호도하기 위한 면피용인 것 같다. 한국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과잉’이기 때문에 필자의 이런 우려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횡포를 청산하자는 것은 요즈음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통신비밀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영역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는 지금의 북한이 증명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전자 정부의 꿈은 IT 산업의 촉매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정보에 대해 중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교육부의 NEIS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의도가 선하다 해도 옳다는 보장이 없으며, 더구나 결과가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필자의 생각은 전자 정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되는 서구의 관련법은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있으며 OECD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아도 한국은 미흡한 점이 많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 차원인 것 같고 정보의 중앙 집중으로의 사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세히 검토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보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사용, 뒤집어 보면 제한된 공개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수의 증가와 개인정보 오남용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법률안은 개인건강정보의 “취급기관”이라는 신개념을 상정한다. 여기에 동 법률안이 설립하려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도 취급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료 정보의 중앙집중화를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건강정보의 “위탁업무”라는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개인 건강정보를 “위탁”의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그럼으로써 권리자는 모든 사람의 모든 건강 정보를 자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OECD의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살펴보자.

(1)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하며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대상으로는 인종, 양심, 범죄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청, 감청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정보 주체를 속여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그 사용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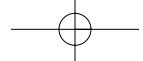
(3) 수집목적의 명확성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 한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그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하여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공개, 기타의 사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5) 안전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안전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6) 공개성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과 그 정책은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이용목적, 정보관리자를 식별하고, 정보처리자의 주소를 분명히 해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참여원칙의 필요조건이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갖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소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와 자기의 정보에 대한 폐기, 정정, 수정을



O P I N I O N | 시 론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8) 책임원칙 : 정보관리자는 이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맺는 말

21세기 뿐 아니라 어느 시공간을 막론하고 또 정보화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보호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자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살짝 부정해보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된다. 더 큰 선을 위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지극히 부정의 한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의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의학을 과학적으로 편협하게 가르치고 배웠다고 하나 인간성 자체를 시험대상으로 삼으려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의사가 걸어야 할 길이다. 굳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개인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중심에서 주도하기는커녕 심판자 이상으로 끼어드는 것도 안된다.

